

[논 문]

# EU 지리적 표시사건의 쟁점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 TRIPs협정상 내국민대우원칙을 중심으로 -

박현경\*\* · 이은섭\*\*\* · 장두채\*\*\*\* · 한재필\*\*\*\*\*

## 《차 례》

- |                                  |             |
|----------------------------------|-------------|
| I. 서 론                           | IV. 쟁점 및 해설 |
| II. EU 지리적 표시제도                  | V. 결 론      |
| III. 미국·호주 vs. EU : 지리적 표시<br>사건 |             |

## I. 서 론

WTO출범 이후 지적재산권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무역관련지  
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은 국제협약-플러스(plus)방식을 취하면서도 기존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BS-0059).

\*\*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전임강사, 주저자.

\*\*\*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교신저자.

\*\*\*\* 동부산대학교 금융경영과 교수.

\*\*\*\*\* 숭실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지적재산권조약과 달리, WTO상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강제력과 실효성을 가짐에 따라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권조약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TRIPs협정은 WTO회원국들에게 동협정상 규정된 보호보다 높은 정도의 보호까지 부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최소한 보호의 원칙), 다른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TRIPs협정 자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WTO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해는 TRIPs협정의 애매한 규정들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에 관한 WTO분쟁사례를 검토함으로써 TRIPs협정상의 제원칙과 지리적 표시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 사례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이하 EU)이 TRIPs협정상 원칙 중 하나인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을 위배하고, 동협정상 상표권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조항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미국과 호주가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하여 TRIPs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둘째, TRIPs협정상 지리적 표시와 선상표권의 충돌에 대한 WTO분쟁해결기구의 해석기준에 관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EU FTA가 타결된 시점에서, EU의 지리적 표시 강화요구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마련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EU 지리적 표시분쟁에 대한 패널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EU의 지리적 표시제도를 EC의 '농산품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명칭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칙2081/92(이하 이사회규칙 또는 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국·호주와 EU간 WTO 분쟁의 패널보고서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동 분쟁사례의 핵심쟁점들 중에서, 특히 내국민대우원칙 위배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EU FTA상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논의의 전망과 이에 대응

하는 전략에 대하여 검토한다.

## II. EU 지리적 표시제도-EC(현EU)농산품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명칭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칙 2081/92상 지리적 표시보호를 중심으로<sup>1)</sup>

### 1. 개설

1992년 유럽이 통합되면서, 와인과 증류주를 제외한 모든 농산품을 포괄하는 EU차원의 이사회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명칭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칙(2081/92)’이다. 동 규칙은 2005년 WTO패널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규칙 510/2006<sup>2)</sup>으로 대체되었다.

TRIPs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모든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와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라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규칙 2081/92는 와인 및 증류주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두고 보호하고 있다.<sup>3)</sup> 지리적 표시의 범위도 품질관련적 지리적 표시만을 보호함으로써, TRIPs협정상의 최소보호수준을 준수하면서도 강화된 형태의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사회규칙 2081/92를 중심으로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개괄한다.

1)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of 14 July 19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2) 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3) EU는 포도주(EEC Council Regulation No. 2392/89) 및 증류주(EEC Council Regulation No. 1576/89)에 대하여 독립된 보호체계를 두고 있고 지리적 표시를 국내 상표법이나 Community Trademark Regulation(Council Regulation 40/94)에 의하여 인증표장 또는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지리적 표시의 개념

유럽의 지리적 표시는 프랑스의 테루아(terroir)라는 아이디어에서 기원하였다. 테루아란 ‘토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지만,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모든 환경, 즉, 포도가 자라는 토양과 기후조건, 자연조건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정성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품질이 그것이 생산, 제조 등에 있어 특정한 지역적 연관성을 가지며, 동일한 상품이라도 그 지역 외에서 생산되었을 경우, 원래 상품의 품질을 따라갈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sup>4)</sup> 유럽의 지리적 표시는 포도 및 와인의 테루아라는 지역-품질관련성에서 출발하여, 농산물 및 식품으로 확대되어 보호되어 왔다.

이사회규칙 2081/92는 특정 지역과 해당상품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에 따라 원산지명칭과 지리적 표시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5)6)</sup>

### 가. 보호받는 원산지명칭(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원산지명칭은 특정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해당상품의 명칭이 기인한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로서 1) 해당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본질적으로 혹은 전적으로(essentially or exclusively) 원산지의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2) 원산지는 기후·토질·지역 내 노하우(know-how) 같은 고유의 천연·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3) 원재료의 생산과 가공부터 최종상품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원산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나.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4) Justin Hughes, “Champagne, Feta, and Bourbon: The spirited debate about Geographical Indications”, 58 *hastings L.J.*299, 2006. 12. pp. 301-303.

5)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4.

6) 이외에도 EU는 전통특산물보증제(TSG)를 두어 해당상품이 예로부터 유서 있는 성분을 포함한다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해당상품에 TSG로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전통특산물 보증은 일정한 경우 지리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이 일반상품과의 차별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음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특정상품이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1) 상품의 이름을 따온 지역에서 해당상품을 생산하여야 하는데, 원산지명칭과 달리 생산과정에서 한 단계만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져도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원자재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 받을 수 있다. 2) 특정한 품질이나 명성 또는 다른 특징과 지리적 원산지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된다.<sup>7)</sup>

TRIPs협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뜻한다. TRIPs협정상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그 대상이 상품(product)일 것,<sup>8)</sup> 둘째, 상품의 품질과 장소간의 필수적인 연관성(essential nexus)이 있을 것, 셋째, 이러한 지역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표지로서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9)</sup>

TRIPs협정상 지리적 표시와 비교할 때 이사회규칙은 지리적 표시의 대상을 와인 및 증류주를 제외한 농산물 또는 식품에 한정하고 있는 한편, 품질관련적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되, PDO의 경우 Lisbon협정의 원산지표시(appellations of origin)<sup>10)</sup>에 가깝고, PGI의 경우 TRIPs협정상의 지리적 표시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7)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2-3.

8) TRIPs협정의 최소보호의 원칙(minimum standards)에 따라 각국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한편 상품이라면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뿐 만 아니라, 공산품도 지리적 표시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동협정은 표시(indications)라고 규정함으로써 리스본협정에서와 같은 “명칭(appellation)”에 한정되지 않으며, 비지리적 이름, 상징 등도 지리적 연관성을 나타내고 표시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에펠탑을 심볼로 이용하거나, 인도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타지마할사원을 심볼로 사용하는 행위도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이로리, “EU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계명법학, 제9집(2005), 181면)

10) 리스본협정 제2조 제1항 「원산지명칭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기원한 상품과 품질 그리고 자연적이며 인적인 요소(natural and human factor)를 포함한 배타적 또는 필연적으로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게 된 특성 등을 나타내는 국가, 지역 또는 산지(locality) 등과 같은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 3. 지리적 표시의 등록

#### 가. 출원명세서

상품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해당상품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정보를 명세서(product specification) 속에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명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장소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국가명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그 명칭이 지리적 명칭은 아니더라도 농산물이나 농식품이 구체적인 해당 지역에서만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등록할 상품과 지역의 연관성(link)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상품의 주된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생물학적 또는 감각수용성(organoleptic)과 관련된 특성이 특정 지리적 영역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up>11)</sup>

한편 등록자격은 오로지 단체(group)이며, 동 규정 제15조 속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출원할 수 있다. 여기서 단체란 동일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어떠한 모든 연합체(association)를 뜻한다.<sup>12)</sup>

#### 나. 등록절차

개정 전 이사회규칙(2081/92)은 출원상품의 지리적 명칭이 EU회원국 내부에 있는 경우와 EU회원국 외부에 있는 경우를 구별하여 그 등록절차(application for registration) 및 이의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EU내에 지리적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자(단체)는 출원명세서를 EU회원국 정부에 제출하고 회원국 정부가 이를 심사한 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반면, 지리적 표시가 EU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해당지역이 위치한 국가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11)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4(2) b.

12) Id. art. 5.

국가는 동명세서가 이사회 규칙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면 이를 유럽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sup>13)14)</sup>

한편 동이사회 규칙은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해서도 지리적 명칭의 소재 및 이의제기자의 소재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었다. 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제3국의 국민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자국정부에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정부가 다시 이를 유럽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양 절차는 제3국의 신청자의 경우 자국정부가 이의제기를 유럽위원회에 송부함에 있어 법적 의무 없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행한다는 점에서 EU회원국 국민의 경우와 구별된다.

#### 다. 검증기구

이사회규칙(2081/92)은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등록을 위한 절차에 따라 검증기구(inspection structures)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기구는 지리적 명칭이 상품 출원명세서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기구는 한 개 이상의 지정된 검증기관 및 또는 EU회원국에 의해 그러한 목적으로 승인된 민간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4. 등록효과

TRIPs협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상품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1) 일반 공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sup>15)</sup> 2)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방법으로<sup>16)</sup> 그 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legal means)<sup>17)</sup>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협정 제23조는 특

13) Id. art. 5.

14) Id. art. 12bis.

15) TRIPs협정 제22조 2항 「2.지리적 표시와 관련 회원국은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가.당해 상품의 지리적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 수단의 사용」

16) TRIPs협정 제22조 2항 「나.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 2의 의미 내에서의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사용」, 파리협약 제10조의2 참조.

히 와인과 증류주(spirit)의 경우에만 일반 공중의 오인가능성, 부정경쟁행위 유무를 불문하고, 절대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종류(kind), ~유형(type), ~풍(style), ~모조품(imitation)’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이를 확대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사회규칙2081/92는 지리적 명칭은 등록됨으로써 PDO 또는 PGI로 보호받는데, 그 구체적인 효과는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1) 등록된 명칭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2) 등록된 명칭의 오용, 모방 혹은 이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진정한 출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명칭을 번역하거나, ‘~풍(style), ‘유형(type), ‘방식(method), ‘~산(as produced in), ‘모조품(imitation)’처럼, 모방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동반되는 것도 해당 상품과 동등하거나 관련성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sup>18)</sup> 결국 이사회규칙2081/92는 와인과 증류주가 아닌 농산물 또는 식품에 대해서도 모든 잘못된 또는 오인가능한 표시에 대하여 이를 금지함으로써,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가진 상품의 생산자는 등록된 명칭에 대하여 사실상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갖게 하였다.

한편, PDO와 PGI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남부유럽이나 동부유럽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미 국내법을 통하여 이를 보호하는 관행이 존재했던 한편, 독일과 같은 북유럽국의 경우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어 별도의 입법 없이 상표권으로 보호하거나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호함으로써 서로 다른 입법구조를 채택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2중적인 입법배경 속에서, EU회원국의 기존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EU내 지리적 표시를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동일하게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양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어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상품판단에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7) 예컨대 TRIPs협정 제42조상의 민사상권리행사 등과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 뿐 만 아니라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다. TRIPs협정 Remark 4는 제42조의 첫째 문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행위에 의한 시행을 대신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8)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13(1).

## 5.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

TRIPs협정을 비롯한 파리협약, 리스본협정 등은 상표와 구분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연관성을 갖는 특정상품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술적(descriptive) 명칭이며, 일정지역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집합적(collective) 권리로써 양도가 불가하며 보호기간도 제한받지 않는 권리임에 반해, 상표는 개인이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상품에 부착되는 개인 자신의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며, 양도가 가능하고 보호기간의 제한을 받는 권리라는 점이다. 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표는 산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부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명칭이 상표권으로서 식별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sup>19)</sup>

TRIPs협정은 상표권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제17조에서 상표의 공정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뒤에서 살펴볼 WTO/TRIPs분쟁은 양자의 관계정립에 대한 EU와 미국 등의 견해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그러나 EU이사회규칙2081/92은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의 관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칙 제14조 1항은<sup>20)</sup>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이 이뤄진 상품과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해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지리적 표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원산지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가 상표의 명성, 주지성 및 그 상표가 사용된 기간에 비추어 상품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19) 우리 상표법도 제6조 3호(산지), 4호(현저한 지리적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 현저한 지리적명칭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6조 3항).

20)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14.1.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sup>21)</sup> 동조 제2항은 지리적 표시와 상표가 공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일 이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가 '선의로(in good faith)' 등록되었다면, 지리적 표시의 등록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규칙(89/104/EEC) 제3조 제1항 (c)와 (g), 제12조 제2항 (b)<sup>22)</sup>에 따라 상표를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근거가 없을 경우, 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23)</sup>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는 등록이 가능하나, 그 범위 내에서 권리가 제한되어 양자는 공존하게 된다.

## 6. 소결

EU의 지적재산권으로서 지리적 표시제도는 상품의 품질보증적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소비자보호나 부정경쟁방지를 넘어서, 상품의 품질과 지역간 연관성을 통하여 지역농업발전이라는 농업정책적 수단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상품은 지역관련성으로 말미암아 프리미엄을 얻게 되고, 해당지역 내에 노동수요를 창출하고, 전통농법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 그 생물학적, 문화적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

21)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14.3

「3. A designation of origin or geographical indication shall not be registered where, in the light of a trade mark's reputation and renown and the length of time it has been used, registration is liable to mislead the consumer as to the true identity of the product.」

22) First Directive 89/104/EEC of the Council, of 21 December 198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Article 3 - Grounds for refusal or invalidity-1. The following shall not be registered or if registered shall be liable to be declared invalid: (c) trade mark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or indications which may serve, in trade, to designate the kind, quality, quantity, intended purpose, value, geographical origin, or the time of production of the goods or of rendering of the servi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g) sign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the shape which results from the nature of the goods themselves, or the shape of goods which is necessary to obtain a technical result, or the shape which gives substantial value to the goods;

Article 12 - Grounds for revocation-2. A trade mark shall also be liable to revocation if, after the date on which it was registered, (b) in consequence of the use made of it by the proprietor of the trade mark or with his consent in respect of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it is registered, it is liable to mislead the public, particularly as to the nature, quality or geographical origin of those goods or services.」

23)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14.2

다고 보았다.

산업적 농업이 주를 이루는 미국과 호주와 같은 신대륙과 달리, 유럽은 소규모 전통농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세기 들어 신대륙의 농산물에 유럽시장을 내주었던 유럽의 입장에서는 고품질 농산품수출정책의 수단으로서 지리적 표시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EU는 이사회 규칙 속에 지리적 표시의 등록요건, 품질요건, 이의제기절차, 검증기구 등을 자세히 규정해 둠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명세서에 따른 품질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만 지속적인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Ⅲ. 미국·호주 vs. EU : 지리적 표시 사건(DS 174, 290, 2005.4.20.-패널)

#### 1. 사건개요

GATT, GATS와 함께 WTO법을 구성하는 TRIPs협정은 국가간 무역촉진을 위하여 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를 목표로, 내국민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의 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그리고 최소보호수준의 원칙(minimum standards)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소보호수준의 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은 회원국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내의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며, 지적재산권보호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WTO회원국은 TRIPs협정상 규정된 최소보호규정에 따라<sup>24)</sup>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시행할 의무를 지니는 동시에, 동협정상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자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 부여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no less

24) TRIPs협정 제1조 1항 「회원국들은 본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본 협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법을 통해 협정상 요구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고유한 법제도와 관행의 범위 내에서 본 협정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이행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favorable treatment). 만약 어떤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정책이나 법규가 WTO/DSU에 의해 제소되어 TRIPs불합치를 선언받게 되면, 해당정책 내지 법규를 폐지하거나 무역상 제재를 받게 된다.

동 사건은 EC의 '농산품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명칭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칙2081/92(이하 이사회규칙 또는 규칙)'상 그 이행 및 집행조치에 관하여 미국과 호주가 각각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sup>25)</sup> 동 규칙은 제3국의 지리적 표시가 EU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제3국은 EU의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와 동등한(equivalent) 정도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여야 하고, 그 국가 내에서 'EU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건(reciprocity)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일정한 경우 지리적 표시와 선상표(prior trademarks)와의 공존을 인정함으로써, TRIPs협정상의 상표권의 선등록주의와 대립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 호주 등은 이사회규칙 2081/92가 전자에 대하여 TRIPs협정 제3조 1항 및 GATT 1994 제3조 상의 내국민대우조항에 대한 위반, 후자에 대하여 TRIPs협정 제16조 1항 상의 상표권의 독점·배타적 권리조항에 위반되어, TRIPs합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8월 WTO에 제소하였다.

동 사안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최초의 WTO분쟁으로서, 패널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의미와 지리적 표시와 상표권 간 공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 사안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TRIPs협정상의 실질적 쟁점들, 예컨대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다자등록시스템의 마련,<sup>26)</sup> 추가적 보호품목 확대에 관한 논의<sup>27)</sup> 등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지리적 표시에 대한 핵심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패널의 태도는 동 사안에 대한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국의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 양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25) WT/DS174/1(June 1, 1999)/WT/DS290/19(Feb.24,2004).

26) TRIPs협정 제23조 제4항.

27) TRIPs협정 제24조 1항.

첨예한 대립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패널 결정의 의미를 불완전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 2. 패널보고서 상의 주요쟁점

### 가. 내국민대우의 원칙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란 널리 특정한 사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차별을 배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TRIPs협정 제3조 1항은 ‘각 회원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자국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WTO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자국 지적재산권법에서 정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의 권리침해 시 직접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국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sup>28)</sup>

EU 이사회 규칙(2081/92)은 제3국의 지리적 표시가 EU 내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제3국내의 EU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의 동등성(equivalence)과 상호성(reciprocity)을 요구하고 있는데,<sup>29)</sup> 이것이 TRIPs협정 제3조 1항 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패널은 동규정의 TRIPs 불합치성에 관하여 5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데, 1) 지리적 표시보호의 이용가능성, 2) 신청절차 및 이의절차, 3) 규제위원회 4) 검증기구, 5) 라벨부착요건 등이 그것이다. 패널은 각각에 대하여 우선 이러한 조치가

28)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환울아카데미, 2001, 83-84면.

29)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12(1)

‘1. Without prejudice to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Regulation may apply to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from a third country provided that:

- the third country is able to give guarantees identical or equivalent to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4,
- the third country concerned has inspection arrangements equivalent to those laid down in Article 10,
- the third country concerned is prepared to provide protection equivalent to that available in the Community to corresponding agricultural products for foodstuffs coming from the Community.’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여부를 검토한 뒤,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로 인하여 WTO회원국이면서, 비EU회원국인 국가의 국민이 EU회원국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sup>30)</sup> 왜냐하면, TRIPs 제3조 1항은 GATT와 달리 ‘상품’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패널은 EU 이사회 규칙상 지리적 표시규정이 EU 회원국 국민과 다른 WTO회원국 국민간의 ‘기회의 효과적인 평등’(effective equality of opportunities)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했다.

(1) 지리적 표시보호의 이용가능성

(가) 이사회 규칙 제12조 1항이 다른 WTO회원국에도 적용되는가

EU 내에서 어떤 상품의 지리적 명칭을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동이사회 규칙에 따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이사회 규칙은 등록절차와 관련하여 그 지리적 명칭이 EU 내에 소재하는 경우<sup>31)</sup>와 EU 밖에 소재하는 경우를<sup>32)</sup>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리적 명칭이 EU 외부에 소재하는 경우 이를 EU 내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행요건으로서 EU 내에 제공되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제3국의 상호적이고 동등한 보호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sup>33)</sup> 따라서 다른 WTO회원국은 자국 내의 동등성과 상호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EU 내에서 자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을 수 없었다. 호주와 미국은 동 규칙이 조건 없는 내국민대우의무를 규정한 TRIPs협정 제3조 1항, 파리조약 제2조 4항<sup>34)</sup>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U는 동 규칙 제12조 1항은 ‘WTO 협정을 포함한 국제협정을 침해하지 않고(without prejudice to international agreement)’ 적용된다고

30) 미국 PR, para.7-125 참조.

31)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5-7.

32) Id. at art. 12(a)(b).

33) Id. at art. 12(1).

34) TRIPs협정 제2조 1항에 의하여 TRIPs에 편입되었다.

함으로써, 이는 오직 WTO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sup>35)36)</sup>

패널은 동 규칙 제12조 1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다른 WTO 회원국을 배제시키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동 조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WTO 회원국에 대하여 대안적 절차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sup>37)</sup>

(나) TRIPs협정 제3조 1항 위배여부

① 지리적 표시의 이용가능성이 지적재산권보호에 해당되는가?

패널은 우선 지리적 표시의 이용가능성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TRIPs협정 제3조 및 제4조의 목적상 '보호'란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그 이용가능성(availability), 획득(acquisition), 범위(scope), 유지(maintenance), 집행(enforcement)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고, 동이사회 규칙은 지리적 표시의 이용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지리적 표시는 TRIPs상 명시적인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므로 이 사안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sup>38)</sup>

②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인가?

i. 동등한 대우

패널은 TRIPs협정 전문상 '1994년도 GATT의 기본원칙과 관련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 또는 협약의 적용가능성'에 근거하여, GATT 패널보고서상의 동등한 대우(no less favorable) 해석을 동 사건에 원용하고 있다. US-Section337 사건의 GATT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GATT 1947 제3조 4항의 'no less favorable treatment'란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국내판매, 판매의 제공, 상품의 구매, 운송, 분배 또는 이용에 영향을 주는 범규의 적용에 있어서

35) 미국 PR, WT/DS174/R, 15 March 2005, paras.7.38-43 참조.

36)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12(1).

37) 미국 PR, para.7.102 참조.

38) 미국 PR, paras. 7.126-129 참조.

기회의 효과적인 평등(effective equality of opportunities)'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sup>39)</sup>

패널은 본 사안에서 동이사회 규칙으로 말미암아 다른 WTO 회원국 국민이 EU 내에서 자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는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대우에서의 차이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손해(detriment)를 줄 정도로 다른 WTO 회원국의 국민과 EU회원국 국민 간의 기회의 효과적인 평등(effective equality of opportunities)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이사회 규칙의 동등성 및 상호성조건이 두 가지 점에서 EU회원국이 아닌 국가 국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기회의 효과적인 평등을 변형하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동 규칙 제12조 3항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제3국에 위치하는 지리적 지역에 있어서는 EU상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이용가능하지 않다. 둘째, 지리적 표시가 소재하는 제3국이 국제협정에 가입했거나 동 규칙 제12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EU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이용가능하다. 이 요건들은 EU 내에 소재하는 지리적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지리적 표시 보호를 얻기 위한 중요한 '추가적 장벽'(extra hurdle)로서 작용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동등성과 상호성의 조건이 동 규칙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보호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기회의 효과적인 평등을 변형시키고, WTO 회원국을 포함한, 제3국에 소재한 지리적 지역에 대한 지리적 표시보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보았다.<sup>40)</sup>

#### ii. TRIPs 협정상 '다른 회원국의 국민'과 EU국민간의 사실상의 차별

우선 TRIPs협정은 제1조 3항에서 '다른 회원국 국민(national)'이란 '...세계 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및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의 회원국인 경우 이들 조약에 규정된 보호의 적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자연

39) GATT PR in US-Section 337, at para.5.11.

40) 미국 PR, paras. 7.133-140 참조.

인과 법인)과 관련하여 EU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EU 시민이 되므로, EU의 국민이 된다. 그러나 패널은 동이사회 규칙은 지리적 표시가 소재하는 지역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즉 동규정이 WTO의 다른 회원국 국민과 EU 국민 간에 지리적 표시의 소재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sup>41)</sup> 따라서 패널은 EU 내에 소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 국민과 비EU 국민간의 차별여부와 EU 외에 소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국민과 비 EU국민 간의 차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sup>42)</sup>

패널은 EU 외부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동등성과 상호성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차별적 대우로 보는 한편, EU 내부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차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즉, 동이사회 규칙 제2조 2항 a, b 및 제5조에 따르면,<sup>43)</sup> EU 내에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산물 또는 농식품을 특정된 지역 내에서 생산, 가공, 준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통상 그 지역의 거주민,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는 사실상(in practice) 비EU 회원국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도 비EU 회원국 국민이 EU 내에 소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EU 국민이 EU 외에 소재하는 지명으로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사례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동규정상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명칭이 규정되어 있는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규정의 의도와 구조가 이러한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sup>44)</sup> 정리하면, 지리적 표시보호를 받으려는 지리적 명칭의 소재지와 신청인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으로써 사실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45)</sup>

(2) 신청절차와 이의제기절차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이사회 규칙상 지리적 표시의 등록절차는 지리적 명

41) 미국 PR para. 7.151 참조.

42) 미국 PR para. 7.152 참조.

43)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2, 5

44) 미국 PR, paras.7.186-203 참조.

45) 그 외에도 GATT 제3조 4항의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은 동규정이 상품의 국내판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정이며, 문제의 상품이 동종이라는 데 다툼이 없고, 다른 WTO 회원국산 상품이 지리적 표시로서 등록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기 때문에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미국 PR paras. 7.226-239참조)

칭의 소재지가 있는 해당 국가를 거쳐 유럽위원회에 송부됨으로써 등록되어진다. 문제는 동이사회 규칙에 따르면, EU회원국의 경우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절차에 정부의 개입이 법적으로 강제됨에 반하여,<sup>46)</sup> 비EU회원국의 경우에는 등록절차의 개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 따라, 다른 회원국 국민은 EU 회원국 국민이 직면하지 않는 추가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에서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가 된다고 보았다.<sup>47)</sup> EU는 외국 정부의 이러한 협조는 해당 지리적 표시가 상품의 출원명세서와 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비EU 회원국인 제3국 정부는 동이사회 규칙을 인지할 의무가 없으며, 자국입법이 이에 대응되는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법적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EU는 신청절차에 관한 GATTⅢ-4조 위반은 GATT XX조(d)<sup>48)</sup>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이에 대하여 패널은 이미 동이사회 규칙(2081/92) 자체가 GATT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동규정은 GATT XX조(d)조상의 '법 또는 규칙'이 아니라고 평결함으로써 EU의 주장을 배척하였다.<sup>50)</sup>

패널은 나아가 동신청절차의 필요성(necessary)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관련회원국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WTO에 합치하는 대안적 조치가 이용가능한지 또는 WTO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덜한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EU가 비EU 회원국 국민이 해당국가 정부에 의한 사전검증 없이 유럽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며, 이것이 WTO

46)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12b.

47) 미국 PR, paras.7.271-272 참조.

48) GATT 1994 제20조 (일반적 예외) 「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결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9) 미국 PR, para. 7.286 참조.

50) 미국 PR, paras. 7.296-297 참조.

에 합치한다는 제소국들의 주장에 따라, EU의 비회원국 정부에 의한 출원서의 검토 및 송부가 GATT XX조(d)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sup>51)52)</sup>

동이사회 규칙은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해서 지리적 명칭의 소재 및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의 소재에 따라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었다. 동규정 제12(b)조 2에 따르면 모든 이의 제기자들은 그들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설립된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제3국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를 제3국 정부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sup>53)</sup> 그러나 제3국 정부는 EU 이사회 규칙에 따라 이의제기를 검증하고 이를 EU에 송부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제3국의 이의제기자는 동규정에 따라 그 국가의 정부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EU 회원국의 국민이 직면하지 않는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게 되고, 이 규정은 TRIPs상 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한다.<sup>54)</sup>

### (3) 규제위원회

이사회 규칙은 유럽위원회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에 관한 일련의 행정적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 EU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ttee)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5)</sup> 호주는 EU 회원국 국민은 규제위원회에 자국대표를 갖는 반면, 비EU 회원국 국민은 규제위원회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표를 갖지 못하므로 TRIPs상 내국민대우와 동협정 제2조 1항에 의하여 편입된 파리협약 제2조 1항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51) 미국 PR, paras. 7.298-306 참조.

52) 한국-쇠고기 분쟁(DS161, 169)에서 한국은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구분판매제도가 GATT 제20조(d)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구분판매제도가 둔감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necessary) 조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WTO'협정에 합치되면서 합리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존재하는가 여부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았다. 상소기구는 여기서 '필요한'이란 반드시 불가결하고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필요성에 한정되지 않으나, '불가결한'에서 '기여를 하는'이라는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불가결한' 쪽에 가깝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본 사안에서 구분판매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WTO의 합리적인 조치들이 존재하므로 동 조치가 GATT제20조 (d)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53)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12b(2)

54) 미국 PR, paras. 7.341-345 참조.

55)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15.

주장하였다.<sup>56)</sup>

이에 대하여 패널은 위원회 위원이 개별적인 신청자 또는 이의제기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동규정 그 자체로 다른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대우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sup>57)</sup>

#### (4) 검증기구

동이사회 규칙 제4조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필수전제조건으로서 상품의 출원명세서에 합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따르면, 상품명세서는 상품의 지리적 명칭, 특성, 지역과 특성간의 관련성, 관련 검증기구(inspection structures)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동이사회 규칙 제10조는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등록을 위한 절차에 따라 검증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리적 명칭이 상품명세서(product specifications)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기구는 한 개 이상의 지정된 검증기관 및 또는 EU 회원국에 의해 그러한 목적으로 승인된 민간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비EU 회원국에 대하여 검증기구의 설립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음에도, 만약 해당국가가 이러한 검증기구가 없다면, 그 국가의 국민은 EU에 대하여 자신의 상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없게 되므로, 비EU 회원국 국민을 차별한다고 주장하였다.<sup>58)</sup>

패널은 검증기구에 관한 요건은 EU 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하며, 그 실질적 차이도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이사회 규칙 제12(a)조 및 12(b)조는 제3국 정부가 자국 영토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등록출원서와 함께, 자국 내에 EU의 검증기구에 상응하는 검증기구가 설립되어 있다는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추가적 장벽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즉 패널은 동이사회 규칙 제10조에 따른 검증기구에 요구되는 정부참여 및 정부선언제공은 TRIPs 상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sup>59)</sup>

56) 호주 PR, para.7.390 참조.

57) 호주 PR, para.7.402 참조.

58) 미국 PR, para. 7.392 참조.

59) 미국 PR, para. 7.431 참조.

EU는 동검증기구요건이 GATT XX조(d)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패널은 앞서 동이사회 규칙이 GATT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동조에 의해 정당화되는 조치는 ‘범이나 규정’ 자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지 그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EU의 주장을 배척하였다.<sup>60)</sup>

한편 호주는 동이사회 규칙에 규정된 검증기구는 필요한 수준보다 더욱 무역 제한적이므로 TBT협정 제2조 2항과 일치하지 않으며,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상품명세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TBT 협정부속서의 제1조에 규정된 기술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61)</sup> 이에 대하여 패널은 검증기구의 요건이 공정의 통상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러한 검증기관 및 민간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을 뿐, 검증을 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sup>62)</sup>

#### (5) 라벨부착요건

이사회 규칙 제12조 2항은 만약 제3국에서 보호되는 명칭이 EU에서 보호되는 명칭과 동일하다면(homonymous) 상호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의 원산지국을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라벨에 표시할 경우에만 등록이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3)</sup>

미국 등은 라벨부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항이 EU내에 소재한 지리적 표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요건을 제3국에 소재한 지리적 표시 등록시에만 부과함으로써 제3국 국민들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sup>64)</sup>

한편, 패널은 동이사회 규칙 제6조 6항과 제12조 2항을 비교 검토하였는데, 동규정 제6조 6항은 EU 내에서 기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EU의 지리

60) 미국 PR, paras 7.446-447 참조.

61) 호주 PR, paras, 7.492-496 참조.

62) 호주 PR, paras. 7.511-515 참조.

63)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12(2).

64) 미국 PR, para. 7.482 참조. 그러나 EU는 그러한 명칭(such names)은, 제3국의 보호되는 명칭과 EU의 보호되는 명칭 모두 언급한 것으로 원산지국을 나타내는 라벨링요건은 양자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적 명칭을 등록하는 경우에 그 원산지를 상표에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것은 동규정 제12조 2항과 비교할 때 제3국 국민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고 불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sup>65)</sup>

#### 나. 지리적 표시와 기존상표와의 관계

동이사회 규칙 제14조 3항에 따르면 ‘원산지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는 상표의 명성, 주지성 및 그 상표가 사용된 기간에 비추어 상품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등록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66)</sup> 한편 동조 제2항은 기존상표(prior-trademarks)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권리는 제한되며, 기등록상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공존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 및 미국은 이러한 규정이 TRIPs 협정 제16조 1항<sup>67)</sup>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상표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U는 1) 동이사회 규칙 제14조 3항은 기등록 상표와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sup>68)</sup> 2) TRIPs협정 제24조 5항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리적 표시와 기등록 상표가 공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sup>69)</sup> 3) TRIPs협정 제24조 3항<sup>70)</sup> 상 EU는 이러한 공존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 뿐 만 아니라<sup>71)</sup> 4) 동이사회 규

65) 미국 PR, para. 7.499 참조.

66)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14.3

67) TRIPs협정 제16조 1항 「1.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래과정에서 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의 사용시 혼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으며 회원국이 사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8) 미국 PR, para.7.540-549 참조.

69) 미국 PR, paras. 7.583-590 참조.

70)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at art 24.3

「이 절을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약화시키지 아니한다.」

71) 미국 PR, para. 7.628 참조.

칙 제14조 2항은 TRIPs협정 제17조에 의해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sup>72)</sup>

패널은 우선 동이사회 규칙 제14조 3항이 TRIPs협정 제16조 1항 상의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였다.<sup>73)</sup> 나아가 패널은 기등록상표를 침해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동규정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지었다.<sup>74)</sup>

패널은 TRIPs협정 제24조 5항이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치가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의 적격성 또는 유효성 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서,<sup>75)</sup> 이것이 오인가능성을 근거로 상표권의 우선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표권자에게 지리적 표시로서의 사용을 포함한 그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이용가능하도록 함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동이사회 규칙 제14조 2항은 TRIPs협정 24조 5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TRIPs 협정 제24조 3항<sup>76)</sup>에 대하여 EU는 동규정에 따라 기존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을 의무(standstill obligation)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패널은 TRIPs협정 제24조 3항의 범위는 '이 절(section)을 시행함에 있어서'라는 도입부에 의해 제한된다는 데 주목하고 동규정은 Section3(지리적 표시)외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에는

72) 미국 PR, para. 7.640-641 참조.

73) 동조는 상표의 유명성 유지성 및 사용된 기간에 비추어 GI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데, 유명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또는 사용기간이 짧은 기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 동일한 지리적 표시가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조는 상품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특정적이라고 보았다.

74) 미국 PR, paras.7.571-575 참조.

75) TRIPs협정 제24조 5항 「5. 아래 시기에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또는 선의의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가. 제6부에서 정의된 회원국내에서의 이 규정의 적용일 이전, 또는 나. 원산지국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이전,이 절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의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76) TRIPs협정 제24조 3항 「3. 이 절을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약화시키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동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즉 1995년 1월 1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인데, 동일자 이전에는 문제가 된 EC 규정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 TRIPs 제24조 3항은 적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TRIPs협정 제17조는(fair use provision)<sup>77)</sup>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한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제17조에 따른 권리의 제한에 동협정 제16조 1항도 포함된다고 보고, 여기서 제한된 예외의 의미와 관련하여, '예외'란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모규범 전체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의 제한된 일탈로서 그 범위가 좁아야하고, 권리의 매우 적은 감소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았다.<sup>78)</sup>

패널은 동이사회 규칙이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상품이 아닌 일부 상품에 대해 상표소유자의 권리를 감소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일부당사자에 대한 상표소유자의 권리를 감소시켰고, 상표로서 보호되는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든 표시가 아닌(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일부표지에 대하여 상표소유자의 권리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제한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상표소유자와 제3자의 적법한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조건과 관련하여, 모든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상표의 구별성이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려는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으며, 동이사회 규칙은 상표권자의 이러한 이익을 고려하였다고 보았다. 제3자의 이익에 관해 여기서 관계가 있는 제3자란 소비자를 포함하는데 소비자의 이익은 이사회 규칙 제14조 3항이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보았다.<sup>79)</sup>

77) TRIPs협정 제17조 「회원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한다.」

78) 미국 PR, para.7.647-649 참조.

79) 미국 PR, para.7.644-661 참조.

#### IV. 쟁점 및 해설

패널은 DSU(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 제19조 1항에 의거,<sup>80)</sup> TRIPs 협정과 GATT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EU에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2006년 동이사회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내국민대우 원칙과 관련하여 비 EC회원국 국민의 지리적 표시 출원에 있어서 EU의 시스템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들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기존상표의 지속적인 이용에 있어서 원산지명칭이나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 또는 1996년 1월 이전까지 등록된 상표 또는 이용을 통하여 창출된 상표권에 대하여서만 후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축소하였다.<sup>81)</sup>

##### 1. TRIPs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최소수준보호의 원칙

TRIPs 협정은 소위 ‘불완전협정’으로 동협정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각국의 재량에 따라 보호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WTO 회원국들은 동협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법을 통하여 협정상 요구되는 수준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자국의 고유한 법제도와 관행의 범위 내에서 TRIPs 협정상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이행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sup>82)</sup>

이 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관행 및 중요성에 따라 다양한 입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수 있다. TRIPs상 최소수준의 보호의무만 이행하였다면, 그 이상의 보호에 대해서는 각회원국

80) DSU 제19조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1.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Re.9)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Re.10)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81) Council Regulation (EEC) No. 510/2006 art. 14-2.

82) 사법연수원, 「WTO통상법」, 사법연수원, 1999.2, 229면.

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입법으로 미국과 같이 상표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입법주의가 있으며, EU와 같이 별도의 지리적 표시보호법안으로 보호하고 있는 입법주의가 있다. 그 외에도 각국은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다.

TRIPs협정상의 지리적 표시제도와 비교할 때, EU의 농산품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특징은 지리적 표시의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라는 기능 외에도 '품질보증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소비자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해당상품의 지역연관성의 진정성(originality)과 품질보증을 받게 되며, 상품의 생산자는 지리적 표시명세서에 설명된 요건에 따라 품질을 유지해야만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상품을 보호받을 수 있다. EU제도의 이러한 특징은 동 시스템 내에서 품질보증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증기구제도를 통하여 잘 나타난다. EU가 동 분쟁에서 가장 우려하였던 것 중 하나가 패널에 의한 검증기구제도의 부인이었는데, 이것은 곧 EU의 지리적 표시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패널은 검증기구제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였고, EU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시스템의 국제적인 합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매우 환영하였다.<sup>83)</sup> 그러나 여전히 EU 시스템에 대한 EU 내외에서의 회의는 존재하고 있다. 특히 EU 시스템의 거대한 행정체제와 이를 위해 드는 비용 등이 과연 모든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적합인가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최근 들어 지리적 표시보호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리적 표시보호를 위한 EU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이 이들에게 과외의(extra)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다.<sup>84)</sup> 결국 EU식 지리적 표시제도는 TRIPs 협정에 대한 TRIPs-plus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만약 자국의 입법이 TRIPs협정상의 최소수준보호를 준수하고 있다면, 반드시 채택할 아무런 협

83) EU 통상위원회위원인 Mandelson은 “지리적 표시가 기존의 상표권체제와 합치하며,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은 EU에게 지리적 표시의 더 넓은 인지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지역상품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해 주며, 이 점이 우리가 갖는 도하라운드에서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WTO upholds EU system of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EU Focus 2005.163.3)

84)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2002.9)

약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2. 지리적 표시보호의 국제적 조화와 내국민대우원칙

지리적 표시는 각국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독자적 지리적 표시법 등 다양한 법제를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나 보호수준이 상이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지리적 표시 상품의 국가 간 교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 NTB)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TRIPs 협정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예컨대 WTO 회원국인 A국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입법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A국 영역 내에서는, 다른 회원국 국민(A국보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로서, 이하에서는 B국이라 하겠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오로지 자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만 그 규제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내국민대우원칙은 WTO상의 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 principle)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간 자유무역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TRIPs협정은 WTO상 비차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원칙으로서 최혜국대우원칙(MFN; Most Favored Nations Treatment)도 규정하고 있다. 최혜국대우원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혜택은 즉시 조건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동원칙은 무역상대국간의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무역협정을 통하여 당사국간의 양허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내국민대우원칙의 경우는 한 회원국의 국내의 규제주권에 대한 제한으로 나타난다. 즉, 무역상대국 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법규가 이 원칙을 위반하여 시행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고 그 결과 WTO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해당 정책이나 법규를 폐지하여야 하고, 일정한 무역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내국민대우원칙은 일방국가의 국내의 정책 및 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것은 자칫 일국의 규제주권을 침해하는 방식

으로 실현될 수 있다.

내국민대우원칙을 실현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위의 예에서 A국의 국민이 B국내에서 A국내에서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즉 A국은 B국 국민에게 지리적 표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에 반하여, A국의 국민은 B국내에서 자신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TRIPs협정상 최소수준보호의 원칙은 지리적 표시제도의 국가 간의 조화를 통하여 내국민대우원칙에 의한 국가 간의 불공평한 결과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입법의 보호 정도가 매우 상이한 경우, 보호의 정도가 높은 국가는 외국에서의 자국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논의했던 EU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EU는 최소수준보호의 원칙만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 분쟁에서 EU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EU 회원국에 대하여 동등성 및 상호성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비EU 회원국 국민이 EU 내에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국가 내에 EU와 동등한 정도의 수준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것과, EU 이사회 규칙상의 농산품 및 식품에 대한 보호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EU는 동이사회 규칙을 통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EU식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국민의 외국에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향화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정책 내지 법규가 TRIPs협정상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sup>85)</sup>

85) 한편, EC 이사회 규칙의 상호주의 원칙 채택에 대한 미국 등의 반대는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내국민대우원칙에 의하여, EU의 지리적 표시의 강한 보호는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대하여 국경간 포지티브한 외부성(positive cross-board externalities)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의 국민은 보호수준이 높은 국가의 규제에 따라 허용된 상품의 다양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전자의 지리적 표시상품 생산자는 후자의 영역 내에서 후자의 규제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역으로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의 시장에서 전자의 국민이 후자의 국민보다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미국 등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강력한 실행을 유지하고, 상호주의를 통한 지리적 표시보호의 상향화를 지지함으로써 자국의 지리적 표시보호에 의한 외부효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Christophe Charlier and Mai-Anh Ngo, "An Analysis of the dispute European Communities-Protection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http://ideas.repec.org/p/ags/eaee98/10032.html>)

동사안에서는 내국민대우원칙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2) 국적을 기준으로 EU 회원국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를 다른 WTO회원국의 국민에게 보장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국적을 판단함에 있어, TRIPs뿐 만 아니라 기존의 지적재산권협약 및 GATT상 원칙을 함께 고려하고, 차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상(de jure) 차별 뿐 만 아니라, 실제적(de facto) 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동등한 대우’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EU 회원국은 자국민과 다른 WTO회원국의 국민간의 ‘기회의 효과적인 평등’(effective equality of opportunities)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 3.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관계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지리적 표시의 경우 이 외에도 품질보증기능을 통한 농업정책의 수단으로서, 문화다양성, 전통지식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으로서 독자적인 존재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이 있다. EU 및 중국, 인도와 같은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지리적 표시는 단순히 오인가능성에 의한 표시의 보호를 넘어서, 명칭의 절대적 보호를 추구하므로, 포도주나 증류주에 한정되는 지리적 명칭에 대한 절대적 보호를 전상품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지리적 표시는 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므로, 상표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며,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공존을 인정하고자 한다. 동사안에서 패널은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공존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로서 동이사회 규칙의 TRIPs합치성을 선언하였으며, 개정 EU이사회 규칙(2006/510)에 따르면 제14조에서 양자가 공존하는 경우는 상표가 지리적 표시 보호일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선의의 사용을 통하여 상표가 확립된 경우 또는 적용가능한 공동체 법에서 동상표의 무효화 또는 철회의 근거가 없는 경우 등 제한적 예외로서 공존가능성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 4. 확대된 논의-문화적다양성보호의 수단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논의에서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되는 것이 지리적 표시의 문화보호적 기능이다. EU는 지리적 표시야말로 유럽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문화적 유산, 생산에 있어서 전통적 수단, 그리고 자연적 자원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sup>86)</sup> 이러한 주장은 EU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확대 뿐 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 지리적 표시제를 옹호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TRIPs협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남북문제는, 지적재산권에서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지위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그들이 보호받고자 하는 전통지식,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 등이 WTO 밖에서만 논의됨으로써, 자국권리의 WTO 내에서의 강력한 보장을 원하였다. 따라서 TRIPs 상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를 통하여 자국의 전통지식, 생물다양성 및 문화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WTO 내에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은 TRIPs 협정 내에서의 남북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87)</sup>

지리적 표시가 마케팅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을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경우,<sup>88)</sup> TRIPs협정과 UNESCO 문화다양성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CCD 혹은 문화다양성협약)간의 잠재적인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05년 UNESCO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은 협약당사국이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sup>89)</sup> 이는 TRIPs협약상의 내국민대우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잠재

86) EU Background Note. No. 01/04 Why do Geographical Indications Matter to Us?(2004). [http://jpn.cec.eu.int/home/news\\_en\\_newsobj553.php](http://jpn.cec.eu.int/home/news_en_newsobj553.php).(2009.7.20.방문)

87)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2002.9)

88) CCD는 '문화'에 대하여서는 직접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고, 대신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문화적컨텐츠(cultural content), 문화적표현(cultural expression)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농산물이나 식품이 문화적다양성 내지, 표현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찬동하고 있다.(CCD 제4조 참조)

89) CCD 제5조 권리 및 의무의 일반규칙 '1. 당사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조치를 채택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되어 있다. 만약 지리적 표시가 CCD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TRIPs의 대상이 되는 경우,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일정한 조치는 TRIPs상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배가 될 수 있다.

Tomer Broude<sup>90)</sup>는 지리적 표시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생산의 문화, 소비의 문화, 정체성의 문화는 지리적 표시에 의하여 보존되기 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하여 변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지리적 표시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시장정책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근거 하에서 지리적 표시제도의 강화는 보호주의무역정책의 또다른 일면에 불과하며,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만약 지리적 표시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에 기여한다고 본다면, TRIPs 협정과 CCD협약간의 충돌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WTO 회원국 정부의 문화적 조치가 WTO상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CCD협약 제20조는 CCD와 다른 협정간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협약상의 의무와 여타협약상의 의무는 상호독립적이며, CCD가 협약당사국이 다른 국제협약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sup>91)</sup> 실제로 협약상의 충돌시 명확한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동정책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CCD 제6조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1. 각 당사국은 제4조 6항에서 정한 문화정책과 조치의 틀 안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90) Tomer Broude, "Taking 'Trade and Culture' Seriously: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Cultural Protection in WTO Law"(May 1, 2005)참조.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714981> or DOI: 10.2139/ssrn.714981.

91) CCD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모든 조약 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 시키지 않으면서, 가.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나.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2. 이 협약 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여타 조약 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TRIPs협정과 CCD간의 충돌로 말미암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DSU(분쟁해결양해)에 따라 패널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물론 법개정을 통한 양자의 관계정립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WTO법을 개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는 논외로 하겠다.

DSU 제1조에 따르면, WTO협정위반과 관련된 문제를 일방 당사국이 제기 하게 되면 이는 오로지 WTO분쟁해결기구로만 회부되어야 하고, 동기구는 DSU절차에 따라서만 이를 해결해야 한다. 패널(상소기구)은 분쟁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오로지 WTO협정상 양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만 기초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패널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sup>92)</sup>

DSU 제11조에 따르면, 패널은 자신이 담당하는 문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WTO 협정 및 부속협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sup>93)</sup> 따라서 패널의 결정이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정당화 내지 타당성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WTO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자체로서 WTO패널에 부과된 객관적인 평가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패널은 특정분쟁을 심리함에 있어서 WTO법 내에 철저히 구속된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다른 협정을 참고해야만 WTO협정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DSU 제13조 2항<sup>94)</sup>과 비엔나조약법(VCLT) 제31조 (3)(c)는 이러한 경우 관련 협약을 원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패널(상소기구)은

92) DSU 제3조 2항 및 5항 참조.

93) DSU 제11조 패널의 기능 「패널의 기능은 분쟁해결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 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94) DSU 제13조 2항 「패널은 모든 관련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패널은 일방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사실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검토단에 서면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단의 설치에 관한 규칙 및 검토단의 절차는 부록 4에 규정되어 있다.」

WTO협정과 함께 CCD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95)</sup>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패널은 WTO협정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고려할 수 있을 뿐이며, WTO 협정의 명시적 규정에 대한 위반을 정당화시켜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V. 결 론

이상에서 미국·호주와 EU간 지리적 표시에 관한 WTO분쟁을 살펴보고, 그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리적 표시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여타 지적재산권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자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조화는 달성되기에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임은 살펴본 바와 같다. TRIPs협정을 통한 회원국 간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동협정은 최소수준보호의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사건에서 EU 이사회 규칙의 상호성 및 동등성요건은 비EU 회원국국민이 EU 내에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실질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절차적 규정의 차별, 이의제기절차의 차별, 검증기구의 성립 등도 외국인의 지리적 표시보호를 위한 차별적 대우로서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그러나 패널은 EU의 검증기구 자체에 대하여 TRIPs 합치성을 인정함으로써 EU의 지리적 표시관련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EU는 패널의 권고안에 따라 동이사회 규칙을 개정하고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다음의 사항들은 우리나라와 EU 간 FTA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우선 TRIPs 내에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논의(다자시스템구축과 추가적

95) US-Shrimp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분쟁당사국이 가입하지 않은 유엔 해양법조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다자간 환경협약에 포함된 여러 원리들을 당해 사안에서 광범위하게 고려한 바 있어 문화와 통상의 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WTO Appellate Body Report, U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O / DS58 / AB / R, adopted 12 October 1998, para 129; Van den Bossche, 59.)

보호의 확대)는 DDA 중단선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EU는 WTO 농업협정과 같이 농산물 무역에서 있어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문제, 개발도상국의 전통지식이나 문화적 다양성 보존의 수단으로서 지리적 표시 보호 문제 등 지리적 표시보호를 위한 다자적 논의의 장(forum)을 이동,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EU는 FTA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U는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sup>96)</sup>에서 FTA를 통한 공격적인 양자협정체결을 천명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준의 지리적 표시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U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양자협상을 통하여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데 합의하고, 얼마 전 타결된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는<sup>97)</sup> 개정된 이사회 규칙(510/2006)을 적용함으로써 추가적 보호의 범위를 농산물까지 확대하고 있다. EU는 WTO 지리적 표시사건에서 패널이 내린 결정을 통하여 EU독자의 지리적 표시보호체계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에 근거하여 더욱 강력하게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양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지리적 표시(농식품 및 포도주·증류주)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고, TRIPs협정상 추가적 보호대상을 농식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선행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적 사용을 보장한다고 합의하고, 스카치위스키, 샴파뉴 샴페인 등을 협정문 부속서에 기재하고 상표권 수준의 보호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져 있다.<sup>98)</sup>

지리적 표시는 매우 유럽 중심적(euro-centric) 개념이다. 불과 20년도 안

96)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xternal\\_trade/r11022\\_en.htm](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xternal_trade/r11022_en.htm) 참조.(2009.7.20방문)

97) 연합뉴스에 따르면,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3일 오후 마침내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오는 9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께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연합뉴스, 2009-07-13, 22:14기사입력,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269297&iid102830&oid=001&aid=0002762553&ptype=011>, 2009.7.20방문)

98) K모바일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249192](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249192), 2009.7.20방문)

된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보호의 역사로 미루어, 아직 지리적 표시가 어떠한 잠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전통특산품이 농산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잠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확대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지리적 표시가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통상적 가치를 넘어서,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될 때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확대는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통상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을 형성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의 제도적 가치 내지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제도의 보호범위와 보호수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TRIPs 원칙상 최소기준 보호의 원칙하에 회원국에게 재량에 따른 보호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합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의 확대적용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수용여부와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EU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응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리적 표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유럽연합 농산품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명칭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칙, 내국민대우원칙, 상호주의, 동등성, 최소기준보호의 원칙

투고일 : 2009. 07. 02.

심사일 : 2009. 07. 23.

게재확정일 : 2009. 07. 23.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득갑, “EU의 지리적 표시(GIs) 보호 요구와 대응”, SERI 경제포커스, 제144호, 2007.05.21.
- 김병일,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특허청용역보고서)』, 특허청, 2005.2.
- \_\_\_\_\_, “지리적 표시관련 주요쟁점분석 및 대응방안”, 지식재산21, 통권94호, 2006.1.
- \_\_\_\_\_, “한-EU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쟁점”, 산업재산권, 통권 제26호, 2008.8.
- 김승호, 『WTO 통상분쟁해설(2)』, 법영사, 2007.
- 김정완,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내국민대우의 원칙”, 기업법연구, 제12권 제2호, 2005.6.
- 라공우 외, “신재적재산권중 지리적 표시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9권1호, 2005.2.
- 박경신, “일반논단 :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 사이의 상호지지적인 관계 정립을 위하여 -관계정립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34권, 단일호, 2008.1.
- 박준우, “지리적 표시의 다자등록시스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6집, 2004.3.
- \_\_\_\_\_,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충돌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04.8.
- 박현경, “지리적 표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3.
-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과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호, 2006. 12.
- 이로리, “EU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계명법학 제9집, 2005.

\_\_\_\_\_, “EC-농산품 및 식료품의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사건”, 통상법률, 2005.12.

이은섭, 『국제통상법』,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도서출판한울, 2001.

홍지은, 지리적 표시, 진보네트웍센터, [http://act.jinbo.net/wiki/index.php/%ED%95%9CEUFTA\\_%EC%A7%80%EB%A6%AC%EC%A0%81%ED%91%9C%EC%8B%9C%EC%97%90\\_%EB%8C%80%ED%95%9C%EC%9D%98%EA%B2%AC](http://act.jinbo.net/wiki/index.php/%ED%95%9CEUFTA_%EC%A7%80%EB%A6%AC%EC%A0%81%ED%91%9C%EC%8B%9C%EC%97%90_%EB%8C%80%ED%95%9C%EC%9D%98%EA%B2%AC) (2009.7.20방문).

황중환·김수석, “지리적 표시의 법제화 내용분석”, 지적소유권법연구, 제3권, 1996.

Burkhardt Goebel,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The road to DOHA”, 93 Trademark Rep. 964.

Christophe Charlier and Mai-Anh Ngo, “An Analysis of the dispute European Communities—Protection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http://ideas.repec.org/p/ags/eaae98/10032.html>.

Christophe Beat Graber, “The New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A Counterbalance to the WTO?”, J. Int Economic Law, 2006. 9.

Dev Gangjee, “Protecting Geographical Indications as Collective Trademarks :The Prospects and Pitfalls”, IIP Bulletin 2006.

EU Background Note. No. 01/04 Why do Geographical Indications Matter to Us?(2004), [http://jpn.cec.eu.int/home/news\\_en\\_newsobj553.php](http://jpn.cec.eu.int/home/news_en_newsobj553.php).

Justin Hughes, “Champagne, Feta, and Bourbon:The spirited debate about Geographical Indications”, 58 hastings L.J.299, 2006. 12.

Kal Raustiala, “The Global Struggle over Geographical Indications”, 18. Eur.J.Int’L. 337.

Nina Resinek,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Coexistence or

First in time, First in Rights Principle”, E.I.P.R. 2007, 29(11).

Tomer Broude, “Taking ‘Trade and Culture’ Seriously: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Cultural Protection in WTO Law”(May 1, 2005)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714981> or DOI:  
10.2139/ssrn.714981.

Tunisia Staten,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ion under the TRIPS Agreement: Uniformity not Extension”, 87 J. Pat. & Trademark Off. Soc’y 221.

WT/DS174(15 March 2005).

<Abstract>

**An Analysis on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under the TRIPs Agreement**  
**- A Case on EC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

Park, Hyun-Kyung · Lee, Eun-Sup · Jang, Doo-Chae · Han, Jae-Pil

This article is a case-study on GI protection under the TRIPs. The case has bee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gainst EC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GI under the EC Regulation. The case has dealt with two important issues,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and the coexistence of GIs and Trademarks.

First of all, this article talks about the general GI system under the TRIPs and studies about the EC GI system (under the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of 14 July 19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Then it provides the history about EU vs. U.S., Australia case and analyses the panel report in terms of the national treatment in several aspe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Is and prior trademarks.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EC Regulation violated the national treatment under the TRIPs, but the structure of EC system itself was complied with the TRIPs. Further,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EC Regulation on the coexistence was consistent with art. 17 of the TRIPs as 'limited excep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deal with about the protection of GI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GIs, it has great economic/trade stakes and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As a result, the degree of protection is still sensitive and controversial at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In our situation negotiating the GI protection with the EU, this issues deserve to appreciate.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treatment and the minimum standards under the TRIPs,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importance of GIs in our marketplace and find out the adequate degree of GI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hips.

Key Words: Geographical Indication, TRIPs,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of 14 July 19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National Treatment, Reciprocity, Equivalence, Minimum Standards